

감정평가서

의뢰인 : (주)하나자산신탁

건명 :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766-1 외 1필지
평택합정에스케이뷰 주상복합1 제1층
제112호 외 2개호

번호 : RB200422-02-1203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 시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리얼티뱅크감정평가법인 경기북부지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무원로 6번길 12 (행신동, 대흥빌딩 408호)

TEL.(031)974-3345

FAX.(031)965-3953

감정평가서 요약

I. 감정평가액: ₩314,400,000.-

기호	층	호수	전유 면적(㎡)	대지권 면적(㎡)	감정평가액(원)	배분가액(원)	
						토지	건물
1	제1층	제112호	42.77	8.18	105,200,000	31,560,000	73,640,000
2	제1층	제113호	42.06	8.04	101,600,000	30,480,000	71,120,000
3	제1층	제114호	44.55	8.52	107,600,000	32,280,000	75,320,000
합계					314,400,000	94,320,000	220,080,000

II. 특이사항

1. 본건 인·허가 사항

해당사항 없음.

2. 주요 등기사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가처분, (가)압류, 가등기 및 제한물권 현황 기록사항 없음.

3. 상가건물임대차 현황

확정일자 임대차계약 해당없음.

4. 전입세대 열람내역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5. 임대차 조사 내역

공히 공실상태이며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물품이 적치되어 있는 상태임.

감정평가서 요약

6. 관리단 관련사항

본 건물 제1층 제107호에 평택합정에스케이뷰 상가관리사무소(전화: 031-655-1102)가 소재하며 본건에 대한 관리비 체납이 있는 것으로 탐문조사 되었으나 구체적인 체납액을 확인하기가 곤란하였음.

(구분건물) 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엄정효

엄

정

효

(인)

(주)리얼티뱅크감정평가법인 경기북부지사

지사장

엄정효

(서명 또는 인)

감정평가액	삼억일천사백사십만원정(₩314,400,000.-)				
의뢰인	(주)하나자산신탁	감정평가 목적	공매		
채무자	-	제출처	(주)하나자산신탁		
소유자 (대상업체명)	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	기준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조건	-		
목록표시근거	귀 제시목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2020. 04. 22.	2020. 04. 22.	2020. 04. 27.	
감정평가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구분건물	3개호	구분건물	3개호	-	314,400,000
	이	하	여	백	
합계					₩314,400,000
심사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 감정평가사 박상준				
	박상준				(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소재 “평택여중사거리”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구분건물)으로서, (주)하나자산신탁에서 의뢰한 공매목적의 감정평가임.

2. 감정평가 근거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감정평가관련 제 규정 및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감정평가하였음.

3. 기준시점,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본건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근거하여 가격조사 완료일인 2020년 04월 22일이고, 실지조사 실시기간은 2020년 04월 22일이며, 실지조사내용은 “II.대상물건의 개황”을 참조 바람.

4. 기준가치

본건은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음.

5. 감정평가 조건

해당사항 없음.

6. 그 밖의 사항

가. 본건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은 귀 제시목록에 의거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나. 본건 구분건물은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이 일체로 하여 가격이 형성되어 있으나, 귀 요청에 의거하여 토지가액(30%)과 건물가액(70%)으로 구분하여 후첨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에 표시하였으며 토지·건물 배분비율은 “집합건물 구분평가지 토지·건물 배분비율에 관한 연구(2007. 05. 한국부동산연구원)”을 참조하되, 당해 토지 및 건물의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약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음.

다. 본건 인·허가 사항

해당사항 없음.

라. 전입세대 열람내역(행신2동 주민센터, 발급일: 2020.04.23.)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마. 상가건물임대차 현황(발급일: 2020.04.27.)

확정일자 임대차계약 해당없음.

바. 임대차 조사 내역

공히 공실상태이며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물품이 적치되어 있는 상태임.

사. 관리단 관련사항

본 건물 제1층 제107호에 평택합정에스케이뷰 상가관리사무소(전화: 031-655-1102)가 소재하며 본건에 대한 관리비 체납이 있는 것으로 탐문조사 되었으나 구체적인 체납액을 확인하기가 곤란하였음.

아. 주요 등기사항(발급일: 2020.04.23.)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가처분, (가)압류, 가등기 및 제한물권 현황 기록사항 없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대상물건의 개황

1. 대상물건의 확정

가. 구분건물

1) 건축개요

명칭	평택합정 SK VIEW 주상복합1		
소재지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766-2 외 1 필지		
대지면적	4,390.4㎡	연면적	37,844.56㎡
건축면적	2,270.45㎡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27,466.18㎡
건폐율	51.71%	용적률	625.60%
층수	지하 3층/지상 20층	높이	62.71 m
착공일	2004.10.01.	사용승인일	2007.04.03.
주구조, 지붕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주용도	공동주택(아파트),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 자료출처 :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대상물건의 개요

기호	층	호	전유면적 (㎡)	공용면적 (㎡)	계약면적 (㎡)	전용률 (%)	대지권 (㎡)	건축물대장상 용도
1	1층	112호	42.77	28.13	70.90	60.32	8.18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2	1층	113호	42.06	27.67	69.73	60.32	8.04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3	1층	114호	44.55	29.30	73.85	60.32	8.52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2. 구분건물 개황

위치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766-1, 766-2 소재 평택합정 에스케이뷰 주상복합1 제1층 제112호 외 2개호로서 “평택여중사거리” 남동측 인근에 위치함.						
주위환경	본건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주상복합아파트, 아파트 등이 혼재하는 노선상가지대이며 입지여건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위치하여 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임.						
토지의 형태, 규모, 이용상태 등	2필지 일단의 부정형 평지로서, 주상복합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인접도로상태	본건 북측으로 왕복4차선, 동측으로 노폭 약 6m, 남측으로 노폭으로 8m 내외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사항 등	합정동 766-1: 일반상업지역, 종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신한중고), 상대보호구역(평택여중) 합정동 766-2: 일반상업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종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신한중고), 상대보호구역(평택여중)						
건물의 구조 및 마감재 등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사용승인일: 2007.04.03.) 규모: 지하3층/지상20층 외벽: 인조석재 등 마감 창호: 칼라샷시 창호 등						
이용상황	공히 근린생활시설로서 기호(1-3)은 공히 공실상태임.						
부대설비	급배수 및 위생설비	난방 설비	냉방 설비	소화 설비	화재탐지 설비	승강기 설비	주차시설
	○	-	-	○	○	○	○
공부와의 차이 및 기타	해당사항 없음.						
부합물 및 종물관계	해당사항 없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I.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1.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가. 감정평가방법의 개요

감정평가방법은 대상물건의 성격·감정평가목적 또는 조건에 따라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원가방식,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비교방식 및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수익방식이 있음.

감정평가방법	감정평가방법의 내용
거래사례 비교법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법으로,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임.
원가법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법으로,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임. 이 때 감가수정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임.
수익환원법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법으로,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임.

나.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 1) 구분건물은 제반 입지조건, 주위환경, 층별·위치별 효용도와 건물의 구조, 용재, 부대설비, 시공정도, 현상 및 인근지역 내 유사물건의 거래사례, 감정평가사례, 인근 가격수준 및 낙찰가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대지권을 일체로 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하였으며, 시장성 있는 구분건물인 대상물건의 특성, 표준적인 임대료 수준 파악이 곤란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의 비교는 생략하였음
- 2) 구분건물은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이 일체로 하여 가격이 형성되어 있으나, 귀 요청에 의거하여 토지가액(30%)과 건물가액(70%)으로 구분하여 후첨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에 표시하였으며 토지·건물 배분비율은 “집합건물 구분평가지 토지·건물 배분비율에 관한 연구(2007.05. 한국부동산연구원)”를 참조하되, 당해 토지 및 건물의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약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거래사례비교법)

가. 개요

거래사례비교법이란 시장성에 근거하여 대상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가치형성요인의 비교 및 시점수정 등을 가하여 대상 물건에 대한 기준시점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을 말하며 이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을 비준가액이라함.

$$\text{비준가액} = \text{사례가격} \times \text{사정보정}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비교} \times \text{개별요인비교} \times \text{전유면적비교}$$

나. 비교사례의 선정

1) 가격조사 자료

1.1) 경매매각가율

유형	지역	매각률(%)	매각가율(%)	비고
상가	경기도	25.81	68.83	최근1년 기준
	평택시	21.21	49.42	

※ 자료출처 : 지지옥션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1.2) 감정평가사례 및 거래사례

기호	소재지	건물명 동, 호	전유 면적 (㎡)	거래시점 기준시점	거래(평가) 금액(원)	전유면적당 단가(원/㎡)	비고
①	합정동 766	평택합정에스케이뷰 주상복합2 1층 126호	46.44	2020.03.02.	197,000,000	4,242,033	거래사례
②	합정동 766	평택합정에스케이뷰 주상복합2 1층 127호	41.50	2018.06.25.	170,000,000	4,096,386	거래사례
③	합정동 766	평택합정에스케이뷰 주상복합2 1층 134호	35.00	2018.08.15.	74,000,000	2,114,286	거래사례
④	합정동 766-1 외	평택합정에스케이뷰 주상복합1 2층 202호	102.46	2019.06.26.	230,000,000	2,244,778	거래사례
⑤	합정동 766	평택합정에스케이뷰 주상복합2 2층 227호	71.51	2020.01.15.	139,000,000	1,943,784	담보
⑥	합정동 766-1 외	평택합정에스케이뷰 주상복합1 2층 205호	128.18	2018.01.02.	190,000,000	1,482,291	거래사례

※ 자료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정보(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체계(한국감정원)

2) 비교 사례의 선정

대상 물건과 지리적 접근성 및 물적 유사성이 높고, 이용상황 및 주위환경 등에서 비교가능성이 높으며, 비교적 최근에 거래된 “거래사례③(기호(1-3))”을 비교사례로 선정하였음.

다. 사정보정

비교 사례는 인근지역의 정상적인 가격수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않음.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라. 시점수정

1) 산정방법

한국감정원이 조사·발표하는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의 “경기도 평균, 집합상가 자본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음.

2) 집합상가 자본수익률(경기도 평균, %)

기 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2018년	-	-	0.67	0.57
2019년	0.55	0.43	0.55	0.61

※ 2020년 1분기 이후의 자본수익률은 고시되지 않아 2019년 4분기의 자본수익률을 연장하여 적용하였음.

3) 비교 사례③ 시점수정치 산정(2018.08.15.~2020.04.22.)

$$(1+0.0067*47/92)*(1+0.0057)*(1+0.0055)*(1+0.0043)*(1+0.0055)*(1+0.0061*205/92)$$

≒ 1.03859

마. 지역요인 비교

본건과 비교사례는 인근지역 내에 소재하므로 지역요인은 대등함.(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바. 개별요인 비교

1) 개별요인 비교항목

요인구분	세부항목(상업용)
단지외부요인	고객 유동성과의 적합성, 도심지 및 상업, 업무시설과의 접근성, 대중교통의 편의성(지하철, 버스정류장), 배후지의 크기, 상가의 성숙도, 차량이용의 편의성(가로의 폭, 구조 등) 등
단지내부요인	단지 내 주차의 편리성, 건물전체의 공실률, 건물 관리상태 및 각종 설비의 유무, 건물 전체의 임대료 수준 및 임대비율,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건물의 규모 및 최고층수 등
호별요인	층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주출입구와의 거리,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와의 거리, 향별 효용,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권의 크기 등
기타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개별요인 비교

기호	비교 사례	단지외부요인	단지내부요인	호별요인	기타요인	비교치
1	①	1.00	1.00	1.12	1.00	1.120
		본건은 사례 대비 호별요인(위치별 효용, 출입구와의 거리 등)에서 우세함.				
2	①	1.00	1.00	1.10	1.00	1.100
		본건은 사례 대비 호별요인(위치별 효용, 출입구와의 거리 등)에서 우세함.				
3	②	1.00	1.00	1.10	1.00	1.100
		본건은 사례 대비 호별요인(위치별 효용, 출입구와의 거리 등)에서 우세함.				

사. 적용단가의 결정

기호	사례단가 (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적용단가 (원/㎡)
1	2,114,286	1.000	1.03859	1.000	1.120	2,459,381
2	2,114,286	1.000	1.03859	1.000	1.100	2,415,464
3	2,114,286	1.000	1.03859	1.000	1.100	2,415,464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V. 감정평가액 결정 및 결정의견

1. 감정평가액의 결정

기호	층 호수	전유면적 (㎡)	적용단가 (원/㎡)	산정금액 (원)	감정평가액 ¹⁾ (원)
1	제1층 제112호	42.77	2,459,381	105,187,725	105,200,000
2	제1층 제113호	42.06	2,415,464	101,594,416	101,600,000
3	제1층 제114호	44.55	2,415,464	107,608,921	107,600,000
합계		-	-	-	314,400,000

2. 감정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

본건 감정평가액은 비교사례분석, 인근 시세분석, 거래동향의 파악 등 일련의 작업을 통하여 산출하였으며, 평가사례 및 인근 가격수준, 대상물건의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는바 본건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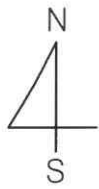
- 이 하 여 백 -

1) 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였음.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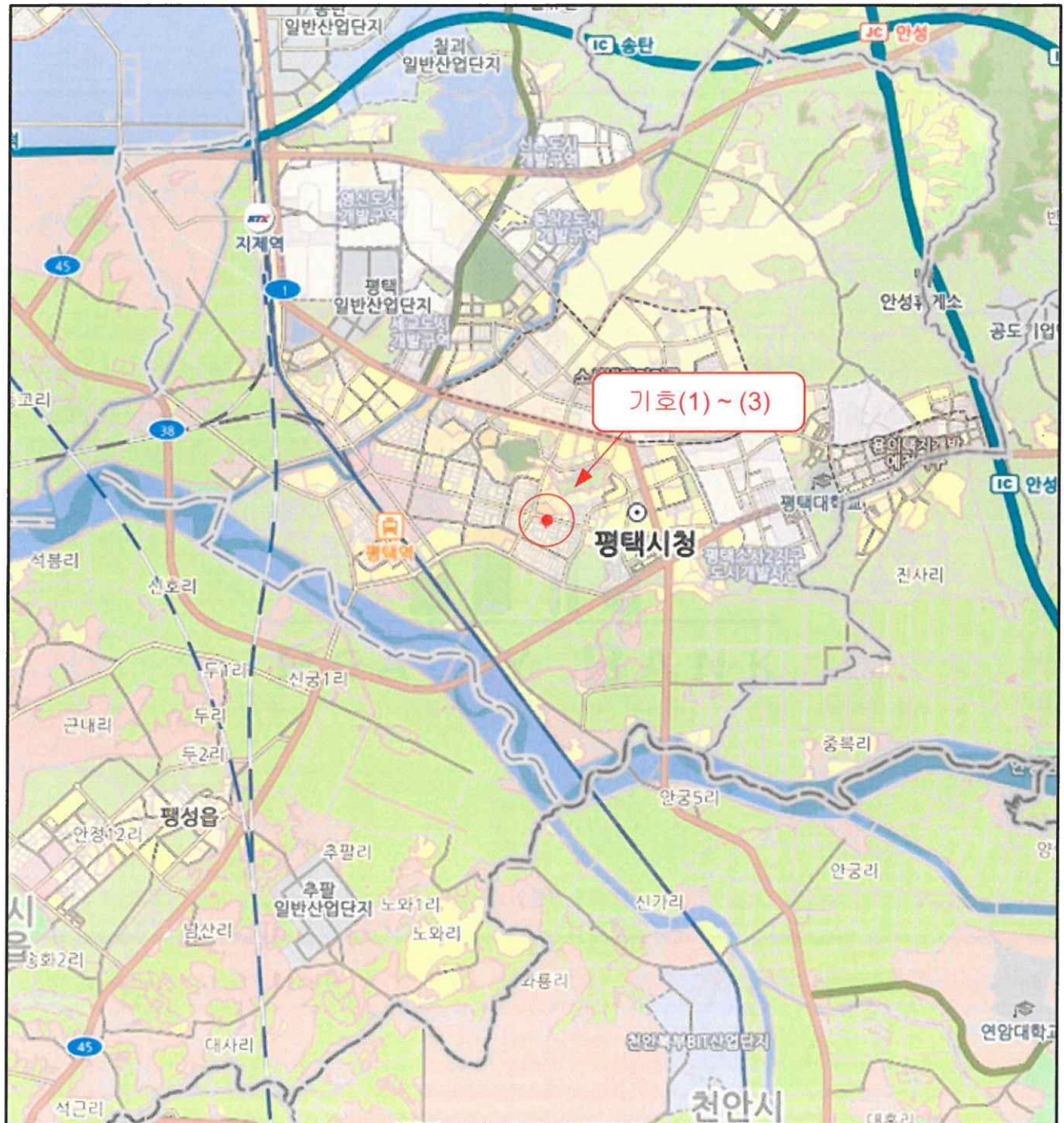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용 도	구조 및 용도지역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176	766-1, 766-2 평택합정 에스케이뷰 주상복합1	공동주택 (아파트), 근린생활 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20층				
(1)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766-1	대	일반상업지역	107.9			
(2)	동소	766-2	대	일반상업지역	4,282.5			
1				(내) 철근콘크리트조 제1층 제112호	42.77	42.77	105,200,000	비준가액
				(1), (2)소유권 대지권	8.18 /4,390.4	8.18		
					토지·건물 배분가격			
					토 지	31,560,000		
2				(내) 철근콘크리트조 제1층 제113호	42.06	42.06	101,600,000	
				(1), (2)소유권 대지권	8.04 /4,390.4	8.04		
					토지·건물 배분가격			
					토 지	30,480,000		
3				(내) 철근콘크리트조 제1층 제114호	44.55	44.55	107,600,000	
				(1), (2)소유권 대지권	8.52 /4,390.4	8.52		
					토지·건물 배분가격			
					토 지	32,280,000		
합 계							₩314,400,000.-	
< 이 하 여 백 >								

광역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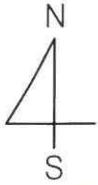


소재지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766-1 외 1필지
 평택합정에스케이뷰 주상복합1 제1층 제112호 외 2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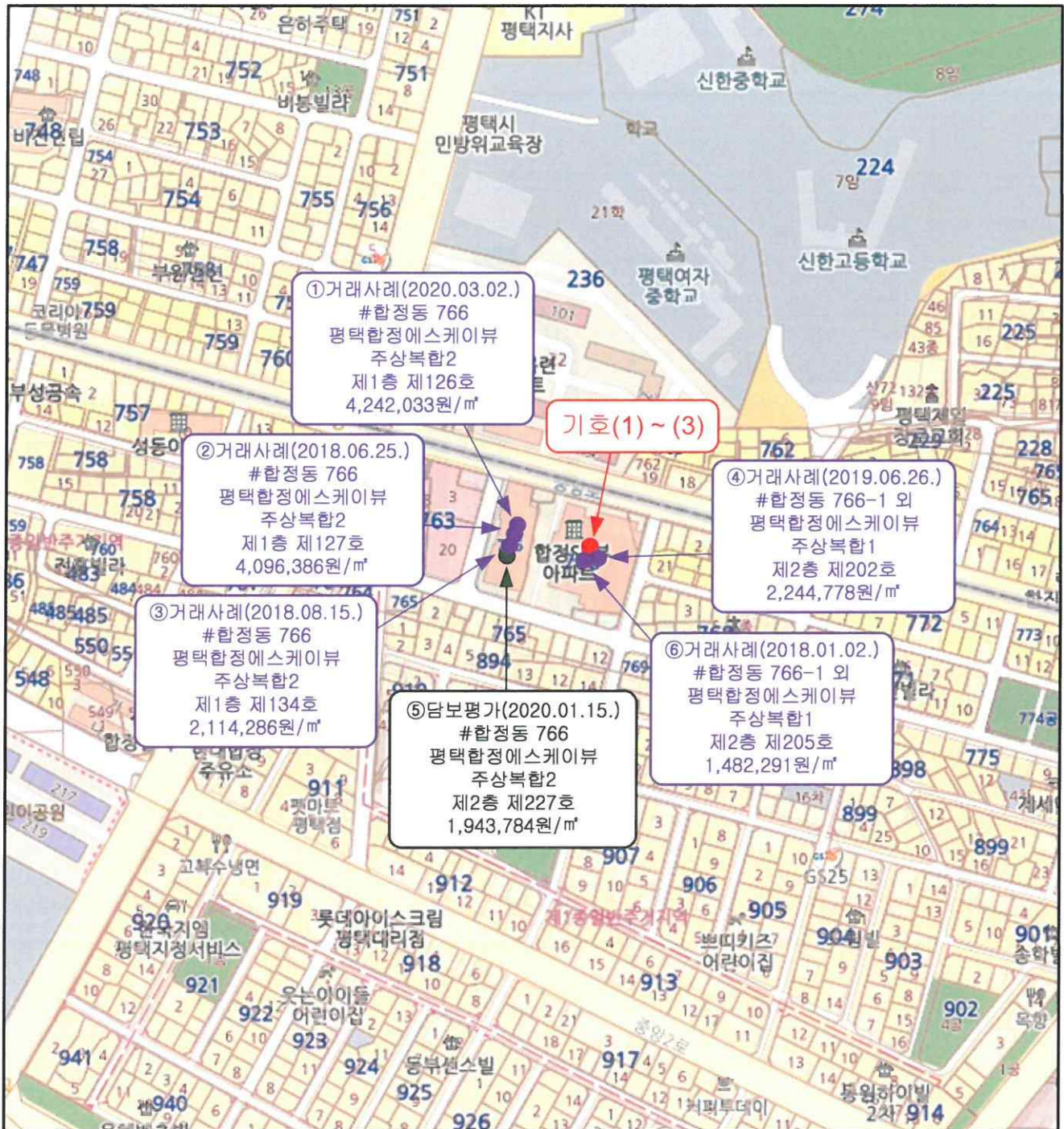


상 세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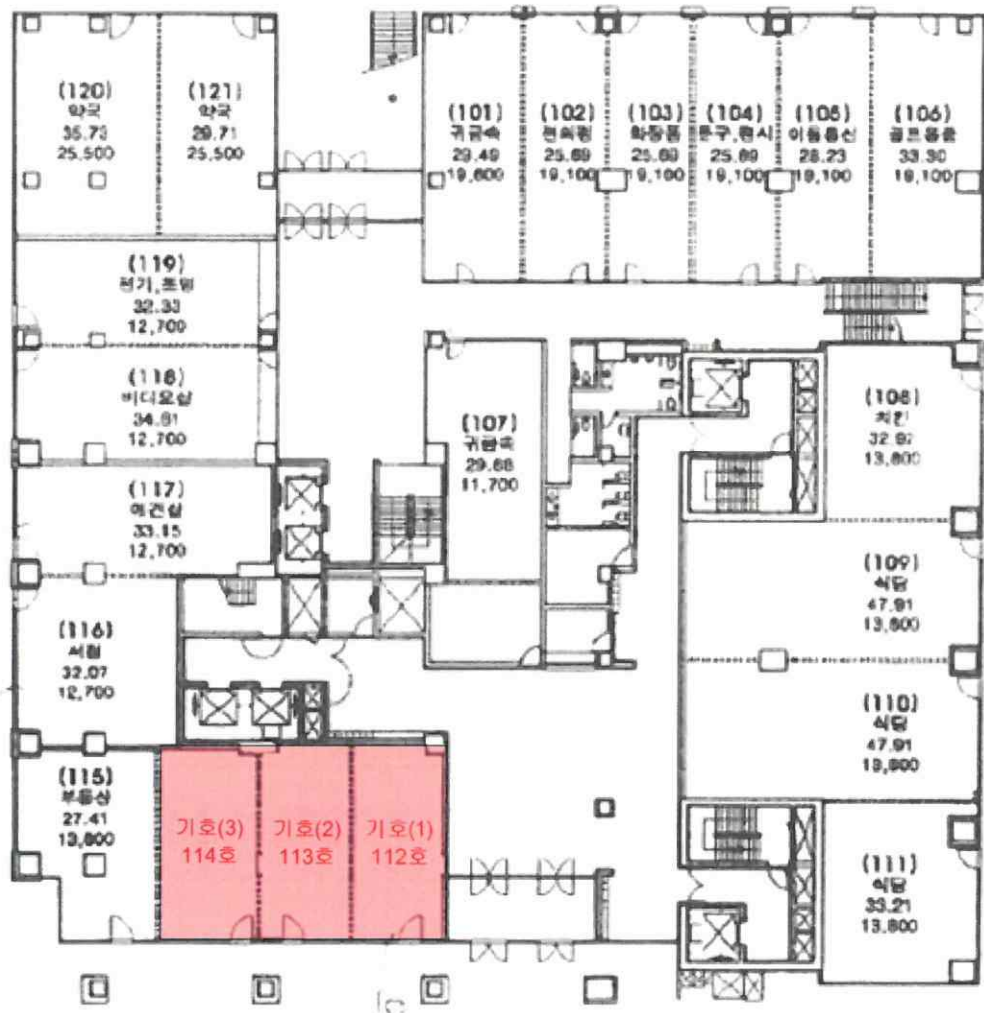


소재지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766-1 외 1필지
평택합정에스케이뷰 주상복합1 제1층 제112호 외 2개호



내 부 구조 및 임대 내역



< 제1층 호별배치도 >

임대부분	보증금 (단위: 원)	월세 (단위: 원)	상호	비고
기호(1) ~ (3)	현황 공실		-	-

사 진 용 지



[본 건물(전면)]



[본 건물(후면)]

사 진 용 지

Page. 2



[본건전경2]



[본건전경3]



[기호(1-3)]



[주위전경]

사 진 용 지

P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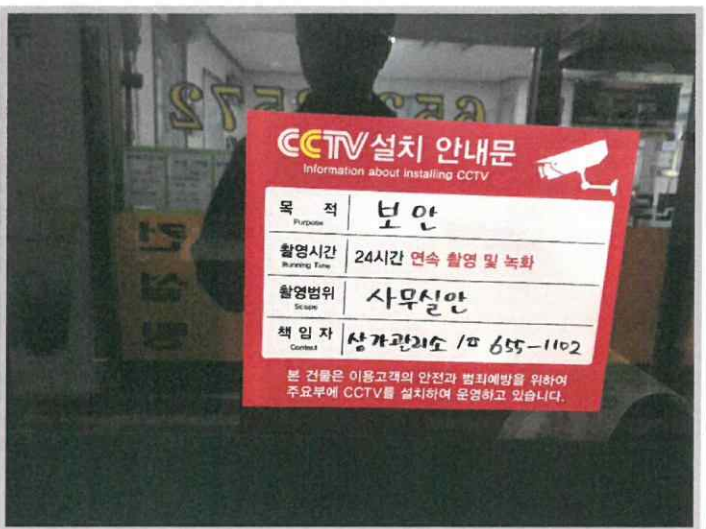
[기호(1) 내부전경]



[기호(2) 내부전경]



[기호(3) 내부전경]



[상가관리사무소 연락처]

(주)리얼티뱅크감정평가법인

우)412-22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무원로 6번길 12 (행신동, 대흥빌딩 408호)
TEL.(031)974-3345 FAX.(031)965-3953

문서번호: RB200422-02-1203

시행일자: 2020. 04. 27

수 신: (주)하나자산신탁

참 조: 양주연 대리님

제 목: 감 정 평 가 회 보

선결			지		
접	일자 시간		시		
수	번호		결재·공람		
처리과					
담당자					

1. 우리 (주)리얼티뱅크감정평가법인의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오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문서 2020. 04. 22.자로 의뢰하신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766-1 외 1필지 평택 합정에스케이뷰 주상복합1 제1층 제112호 외 2개호』건에 대하여 불임과 같이 감정평가서를 회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 임 : 1. 감 정 평 가 서 2 부
2. 청 구 서 1 부 끝.



(주)리얼티뱅크감정평가법인 경기북부지사장



청 구 서

감정평가서번호 : RB200422-02-1203

(주)하나자산신탁 귀하

—금육십칠만일천원整 (₩671,000.-)

2020. 04. 22자로 의뢰하신 『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766-1 외 1필지 평택합정에스케이뷰 주상복합1 제1층 제112호 외 2개호 』 건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되었으므로 상기 금액을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의거 청구하오니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내역-

과 목		금 액	비 고
(가)	평 가 수 수 료	490,840	※ 평가수수료 200,000 + (314,400,000 - 50,000,000) × 11/10,000 = ₩490,840
(나)	여 비	95,000	
	토 지 조 사 비	-	
	물 건 조 사 비	9,000	
	공 부 발 급 비	6,000	
	기 타 실 비	10,000	
	특 별 용 역 비	-	
	소 계	120,000	
합 계 (가+나, 천원미만 절사함)		₩610,000	
부 가 가 치 세		₩61,000	
총 계		₩671,000	
기 납 부 착 수 금		—	
정 산 청 구 액		₩671,000	

※ 수수료 입금시 입금자 명의를 감정서번호(200422-02-1203)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시는 거래처는 입금 후 바로 전화 주십시오. 연락이 안 될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겠습니다.

★ 계 좌 번 호 ★

◆ 국민은행

928701-01-156964

(주)리얼티뱅크감정평가법인경기북부지사

2020년 04월 27일

(주)리얼티뱅크감정평가법인 경기북부지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무원로 6번길 12 (행신동, 대흥빌딩 408호)

TEL. (031)974-3345

FAX. (031)965-3953

[공급자(사업자)등록번호 : 128-85-54005]